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8. 5. 16 선고 2018가단297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(개명 전: C)

변론 종결 2018. 5. 2.

판결 선고 2018. 5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6. 1. 12. 접수 제25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진재경

별지